

## 2024년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계획 공고

국립무형유산원은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의 안정적 전승활동 지원을 위해 2024년 우수 이수자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1일  
국립무형유산원장

### 1. 근거 법령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4항(법률 제18766호, 2022.7.19. 시행)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의2(대통령령 제 32706호, 2022.7.19. 시행)
- 「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」  
(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3-5호, 2023.11.20.시행)

### 2. 선정 개요

- 목적: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의 안정적 전승활동 및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무형유산 전승 기반 조성
- 대상: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,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은 이수자
- 지원 내용: 우수 이수자 월정 장려금 및 역량강화 지원\*  
\* 역량강화 지원: 우수 이수자의 개인 역량강화활동 지원으로 별도 공모 예정('24년 2월)
- 선정 인원
  - (개인종목) 보유자 당 1명
  - (단체종목) 보유단체 당 2명
  - (전수교육학교) 1명

### 3. 선정 절차 및 추천 일정

추천 공고	추천서 접수	검토회의	선정 완료	장려금 지급
추천 공고	자체 평가회의 실시 및 최종 추천서 제출 (전승지원통합플랫폼 전자문서 접수)	우수 이수자 적격 및 추천절차 적합 여부 검토	선정 결과 공고	월정 장려금 지급 개시
23.11월 21일 ~	~ '23. 12월 4일	'23. 12월 중	'23. 12월	'24. 1월~
국립무형유산원	해당보유자 및 보유단체	국립무형유산원	국립무형유산원 → 해당보유자 및 단체	국립무형유산원 → 우수 이수자

### 4. 우수 이수자 추천 방법

- 추천 주체: 보유자(개인종목), 보유단체, 전수교육학교
- 추천 대상 자격: 이수자가 된 후 3년 이상의 해당종목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

※ 추천 제외 대상(무형유산법 제21조제1항제2호): 전통문화의 공연·전시·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
#### ○ 추천 가능 인원

- (개인 종목) 보유자 당 1명
- (단체 종목) 단체 당 2명
- (전수교육학교) 1명

#### ○ 추천 대상 선정 방법

- 추천 인원의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추천대상 자격을 갖춘 희망자에 대하여 ‘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’ 평가회의(자체평가)를 거쳐 추천

※ 단체의 경우, 평가회의 및 정관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천

※ 평가회의: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실시, 추천 대상 자격 이수자가 3배수 미만 일 경우 전체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며, 1인일 경우에는 평가회의 미실시

<평가위원 자격>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. 단 평가대상자의 친족은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음

1.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, 전승교육사 및 단체의 장.
2. 무형문화재위원회 및 시·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·전문위원
3. 무형문화재 관련 학과 시간강사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4.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소·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
5. 무형문화재 보전·진흥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

## 5. 추천서 제출

- 제출 기간: 공고일 ~ 2023.12.4.(월)
- 제출 방법: 전승지원통합플랫폼(소통업무-전자문서)
- 제출 서류
  - 추천서(붙임1) 및 첨부서류\*
  - \* 추천대상자의 이력서 및 이력 증빙 자료(붙임2), 추천대상자의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 입증자료(붙임3)
  - 평가회의 결과보고서(붙임4) 및 첨부서류\*\*
  - \*\* 평가위원 이력서(붙임5) 및 서약서(붙임6)
  - 총회(이사회) 의결서(단체종목만 해당)

## 6. 기타

- 평가회의와 관련된 자료 일체는 5년간 보관·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, 필요시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추천 적격자가 없을 경우, '추천대상자 없음' 을 공문(전승지원통합플랫폼 전자문서)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무형유산법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이수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문의: 전승지원과 우수 이수자 선정 담당(063-280-1446)